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094

발의연월일: 2021. 2. 15.

발 의 자:박 정·고용진·김민철

김승원 · 김홍걸 · 도종환

오영화 · 유정주 · 이규민

이수진 · 임오경 · 장철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체육진흥기금의 2021년 기준 기금지원 규모는 약 1조 3천 9백 억원에 달함. 이는 최근 10년간(2010년 5,295억원) 약 8,600억원 이상 의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임.

국민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기금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사업 성과가 미진한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의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체육재정 누수를 방지하고, 기금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자 함(안 제22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2조의3(성과의 평가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국민 체육진흥계정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확정한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성과 측정·평가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 관리·운용기관에 그 업무를 수행하게할 수 있다.
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 정 관리·운용기관과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
 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의 평가결과를 기금사용에 대한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.
 - ⑤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(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) 등에
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2조의3(성과의 평가) ① 문화
	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
	른 국민체육진흥계정 각 호의
	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의
	성과를 측정·평가하여 그 결
	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확
	<u> 정한다.</u>
	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
	항에 따른 효율적인 성과 측정
	•평가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
	계정 관리 · 운용기관에 그 업
	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	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
	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국민체
	육진흥계정 관리·운용기관과
	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
	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
	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
	항에 따른 기금지원의 평가결
	과를 기금사용에 대한 해당 연
	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
	록 노력하여야 한다.
	⑤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

(평가결과에대한이의신청등)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.